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5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보도확장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도로(차량진입로·출입로) 점용료의 산정기준(요율)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 별표 1 (제3조 관련) 점용물 산정기준 항목 신설
-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1호가목(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)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도로 점용허가(변경 허가의 경우 늘어난 면적에 한정한다)가 필요한 차량 진입로·출입로”항목 신설
- 나. 해당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 하향 조정
- 해당 점용물의 산정 요율을 ‘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’으로 개정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도로법」 제66조(점용료의 징수 등)
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(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)
-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4. 10. 10. ~ 2024. 10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해당없음
- 3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해당없음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해당없음
- 5)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4. 11. 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1호가목(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)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(변경 허가의 경우 늘어난 면적에 한정한다)가 필요한 차량 진입로
· 출입로

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제1항”을 각각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68조”를 “법 제68조”로 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
		점용단위	기간단위	
1. 영 별표 3 제3호에서 정한 점용물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(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)로 인하여 도로 점용허가(변경 허가의 경우 늘어난 면적에 한정한다)가 필요한 차량 진입로·출입로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2.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		토지가격에 0.01를 곱한 금액
3.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,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	신·재생에너지 설비 (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)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공작물·물건 · 그 밖의 시설물로서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 5조제12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삭 제</p> <p>2. ~ 4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(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)로 인 하여 도로점용허가(변경허가의 경우 늘어난 면적에 한정한다)가 필요한 차량 진입로·출입로</u></p>
<p>제5조(점용료 등의 분할납부) ① 점 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「지방 세징수법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 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 액에 대하여 영 제71조제2항 단서 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. 다만, <u>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제1항</u></p>	<p>제5조(점용료 등의 분할납부) ① -- ----- 「지방 세징수법」 제25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 -----</u></p>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.

제6조(점용료 등의 조정)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법 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.

-----.

제6조(점용료 등의 조정) ① -----

----- 법 제68조 -----

-----.

[별표1]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
	점용 단위	기간 단위	
(신 설)	(신 설)	(신 설)	(신 설)
1.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	가로관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	점용 면적 1㎡	1년 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.01를 곱한 금액
	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	
2. 영 별표 3 제 11 호 에서 정한 점용물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신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 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중 차양시설, 비가리개 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	점용 면적 1㎡	1년 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	신·재생에너지 설비 (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 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)		

[별표1]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
	점용 단위	기간 단위	
1. 영 별표 3 제3호에서 정한 점용물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 1호가목(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)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 허가(변경허가의 경우 늘어 난 면적에 한정한다)가 필요한 차량 진입로·출입로	점용 면적 1㎡	1년 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2.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	가로관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	점용 면적 1㎡	1년 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.01를 곱한 금액
	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	
3. 영 별표 3 제 11 호 에서 정한 점 용물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신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 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중 차양시설, 비가리개 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	점용 면적 1㎡	1년 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	신·재생에너지 설비 (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 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)		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점용료의 산정기준(요율)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
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교통건설국 보행행정과 이주원
연 락 처	02-3153-9707